

[보도자료 요약]

■ 현 황

- 행정자치부에서 영업용자동차에만 자동차세를 100%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(2014.11.04)한데 이어 영업용 자동차 중 렌터카에만 자동차세를 최고 1,360% 인상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2014.11.18)
- 영업용자동차 전체에 100% 인상하는 것만도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나, 영업용자동차 중 대여사업용 자동차에만 최고 1,360%까지 추가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5.1.1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

■ 문 제 점

- 생존권 위협
 - 연간매출 약 3조 5천억원, 당기순이익 약 1천 5백억원(4.5%) 시장규모에서 연간 약 2천 100억원 이상의 신규 추가 세부담은 산업을 적자구조로 만들어 업종고사.
- 형평성 없이 특정업계에만 세금폭탄
 - 화물자동차, 전세버스, 건설기계 등도 물류, 제조, 건설, 학원(대학, 사설학원 등) 등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1년이상 제공하고 있으나 대여자동차에 대해서만 비상식적인 증세추진.
- 정책실회성 훼손
 - 행정자치부는 과거(2005.10.25)에도 동일하게 증세를 추진한 바 있었으나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어 철회된 바 있음. 특히 경쟁업종인 리스업의 계획적 건의에 의해 추진된 것이 밝혀져 시위, 탄원 등 업계의 지탄을 받은 바 있었음.
 - 업계의 실태, 증세로 인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와 부처간 협의도 없이 무리하게 증세를 추진하는 것에 업계는 분개하고 있고 개정취지, 사유 등도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아 정책추진의 진정성에 의문.
- 지방세법 입법취지 위반
 - 영업용자동차는 제도적 규제로 비용발생이 많으며 비영업용자동차 대비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지방세법에서 세율을 감면한 입법취지를 무시.

○ 평등권 침해

- 렌터카를 1개월이상 렌트할 경우 자가용자동차로 간주하려는 것은 고유목적 사업범위 내에서 직접수단으로 공여하는 영업용자동차와 비영업목적의 일반 자가용자동차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.

○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인식부족

- 단기·장기 등 계약기간에 따라 렌터카 계약의 실질(임대차계약 관계)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계약기간만을 기준으로 과세를 변경하는 것은 모순.

○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역행

- 자가용자동차증가와는 달리 렌터카사업이 활성화 될수록 고용창출 효과, 부가세수(부가세, 법인세, 소득세) 증가.
- 일정 세수확보를 위한 증세로 거시적으로 산업붕괴, 고용악화, 부가세수가 감소되는 것을 간과.

■ 대 책

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등록을 반납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장외 투쟁을 불사할 방침.